



박영인 박사의 **삼장통합** 특강 시리즈(11)



박영인 박사
미국곡물협회

목 차

- 1월호 / 농업연관 1,2,3차 산업
- 2월호 / 계육산업과 삼장통합
- 3월호 / 통합경영과 삼장통합
- 4월호 / 소비자 지향 계육산업
- 5월호 / 삼장통합과 농장기능
- 6월호 / 삼장통합과 공장기능
- 7월호 / 삼장통합과 시장기능
- 8월호 / 부분통합과 완전통합
- 9월호 / 기업통합과 협동통합
- 10월호 / 소유통합과 계약통합
- 11월호 / 통합주체와 사육주체
- 12월호 / 삼장통합의 이익배분

삼장통합은 통합형태에 따라 소유통합과 계약통합으로 구분하고, 계약통합은 통합주체(integrators)와 사육주체(contract growers)간의 계약에 따른 통합경영 방식이다. 소유통합이 일방적인 수직경영이라 하면 계약통합은 쌍방적인 수직경영이다.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삼장통합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이 통합주체와 사육주체간의 계약통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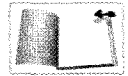
통합주체

계약통합에서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통합주체가 된다. 통합체계의 경영을 총괄(integrated management)하는 것이 바로 통합주체이고, 통합주체의 경영여하에 따라 삼장통합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주체의 역할은 막중하여 그 자체의 체계경영뿐 아니라 산업전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장통합의 통합주체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이 담당한다.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통합경영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통합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계약통합의 경우 통합주체와 계약하는 것은 사육자 농민인데, 기업과 농민간의 계약관계에서 불평등한 거래(unfair trade)의 문제가 제기될 때 그 농민 스스로가 조합을 만들어 통합경영하면 협동조합이 곧 통합주체가 되는 것이다.

계약통합의 기능 분담

내용	통합주체	통합주체
토지 / 사육시설		○
사육자재	○	
사육		○
가공	○	
유통	○	
통합관리	○	



이 시리즈 강좌는 2002년동안 12회에 걸쳐 매월 계속된다.

박영인 박사는 우리나라에 통합경영과 자조금 제도를 맨 처음 소개하여 그 실현에 앞장섰고 삼장통합(三場統合)이란 새로운 용어도 만들었다.

〈편집자주〉

통합주체와 사육주체는 서로 기능을 특화 (specialization)하여 분담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1차산업 관련 기능은 사육주체가 맡고, 2·3차 산업기능 및 통합체계 경영은 통합주체가 담당한다.

계약통합의 기능 분담

여기서 통합주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엿볼 수 있다. 하나의 통합체계/경영단위 (management unit)가 제대로 운영, 관리되는 총책임이 통합주체에 있는 것이다. 그 경영방식/결과와 사육주체의 손익은 직결된다. 통합주체는 경영 그 자체 이상으로 산업/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사육주체

계약통합의 사육주체는 1차산업 수행자인 농민이다. 사육자는 통합경영/계육산업 이전에는 육계산업의 주체로써 모든 경영까지도 책임지던 관리자(broiler operation manager)이다. 농장 사육 뿐 아니라, 사육자재와 생계 판매도 통괄해야 하는 독립적인 경영자이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고도화하면서 사육자 위주 (grower driven)에서 소비자지향(consumer oriented)으로 바뀌게 되고, 산업의 형태도 육계산업(broiler industry)이 계육산업(chicken industry)으로 변모하는 바, 여기서 불가피하게

통합경영체계가 등장, 급기야는 독자적인 사육자의 위치도 통합경영의 계약사육자로 상황 적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관계의 사육주체로 변신하는 것이다.

계약통합에서는 통합주체와 사육주체간에 동등한 관계의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쌍무협정하에 사육주체의 의무를 다하고 약정된 보수(grower payment)를 받는 형태의 계약인 것이다. 따라서 사육주체의 보수를 사육수수료 (grower commission)로 생각/호칭하는 것은 잘못이다. 단순 노력에 대한 수고료 성격이 아니라 사육주체의 많은 기능 분담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이기 때문이다.

사육주체인 농민은 계약체계하에서 소작농 (share croppers)과 같은 무력감을 갖기 쉽다. 의사결정권을 상실한다는 허탈감 때문이다. 또 계약조건이 통합주체에게 유리하고 사육주체는 그저 추종만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사육농민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가 통합주체이면서 사육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취택하면 된다.

통합주체와 사육주체관계는 상호 공생공존하는 대책 (survival measures by mutual cooperation)이라 할 수 있다.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기능분담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그 수행기능에 비례하여 수익/보수가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